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 신청서

본인확인	판매직원	담당	책임자

※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전 산 인 자 란

1. 기본정보

20 년 월 일

성명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도 구분	<input type="checkbox"/> DB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계좌번호 또는 회사명	DC, 기업형IRP의 경우 회사명

2. 운용지시

1) 계속성 운용지시(등록 후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

상품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상품 <input type="checkbox"/> 시포트폴리오
구분	상품명 매수비율(%)
기업 부담금 (퇴직금)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기업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개인 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기업부담금(퇴직금)과 동일한 운용지시(✓체크 후 아래 상품명 및 매수비율 미작성)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개인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 아래 칸의 상품 개수 초과 시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별지]"에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일회성 운용지시(등록 후 최초 입금 건에 한하여 일회성 운용지시 하는 경우에만 작성)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업부담금(퇴직금) <input type="checkbox"/> 개인부담금
	상품명 매수비율(%)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매수비율 합은 100%	

3. 금융소비자 구분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대리인의 경우 "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 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매수하는 상품별 해당 금융소비자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의 상품 매수시 해당 소비자구분 모두 체크).

예금성 상품 (정기예금)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피한정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성년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조합 등 단체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이나 상품설명을 희망
보험성 상품(GIC)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외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국가, 금융회사, 보험 관계 단체, 보험요율산출 기관, 공공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이나 상품설명 희망
투자성 상품 (집합투자증권, 포트폴리오 등)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일반투자자 선택)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전문투자자 선택)



1) **설명무 이행 확인**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기재를 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발생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 듣고 이해함]

2) **계약서류 제공 의무**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일체를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추후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수령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알림톡(발송실패시 LMS 발송)
------------------	--

* 계약서 :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 신청서 사본 또는 전산출력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 확인서

** 약관 : 개별상품 약관 *** 상품설명서 : 개별 상품(투자)설명서 및 이율보증형보험/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가입자 자필기재 :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함]

4. [해당시 작성]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ELB, ETF 등) 매수시 해피클 방식 선택**

<input type="checkbox"/> 전화(휴대폰) 해피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모바일 웹) 해피클 ※ 일정횟수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실시됩니다.
--

5. **고객 유의사항**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매매신청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부담금이 입금된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해당 시점 금리를 확인하시려면 pension.hanabank.com)에 사업자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 다음 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상품운용방법 확인	<p>[DC/IRP]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만기시 자동재예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폐지됩니다. 2023년 7월 12일 이전이라도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을 지정한 경우에는 재예치 불가합니다.</p> <p>[DB]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경우, 만기예정일의 2영업일 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p> <p>①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쉐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p> <p>②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p>
원리금보장상품 예금자 보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DC,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DC,IRP)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 IRP)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 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顺延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TF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매매 신청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 (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상품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영업일에 가능하나, ETF의 상품을 매수하려면 D+4영업일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내의 제공 상품은 개별 상품 제공기관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상품 도입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1599-1111, 1588-1111), 상품별 제공 금융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기에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가입자(가입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